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07	서영석의원	2026.7.28	2026.9.11
	2220343	서영석의원	2026.7.31	2026.9.11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 9. 17.)
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또한,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 불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함(안 제46조제1항).

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라.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 ① 사법경찰관은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한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취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투약 여부를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등은 사법경찰관의 마약류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하여는 그 마약류취급자등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같은 항 제1호가목, 자목 또는 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다목(제44조제1항제1호가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지정·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4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라목(제44조제1항제1호자목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지정·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4조제1항제1호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차목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6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허가관청은 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한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 또는 제32

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벌적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거나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1조의2(마약류취급자 등에 대</u> <u>한 마약류검사의 실시) ① 사</u> <u>법경찰관리는 마약류의 적절한</u> <u>취급·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u> <u>위하여 제3조·제4조 또는 제5</u> <u>조제1항을 위반(제3조·제4조</u> <u>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u> <u>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u> <u>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u> <u>약한 경우에 한한다)하였다고</u> <u>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u> <u>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u> <u>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u> <u>취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u> <u>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u> <u>투약 여부를 검사(이하 “마약</u> <u>류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u> <u>경우 마약류취급자등은 사법경</u> <u>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응하여</u> <u>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검사</u> <u>결과에 불복하는 마약류취급자</u>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
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
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
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
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
다.

② ~ ⑤ (생략)

<신설>

등에 대하여는 그 마약류취급
자등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
사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징금처분) ① -----

-----경우(같은 항 제1호
가목, 자목 또는 더목에 따라 3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중대한 위반행위에 대

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허가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
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
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
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
다목(제44조제1항제1호가목
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지
정·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4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
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
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
라목(제44조제1항제1호자목
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지

정·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4조제1항제1호더목에 따
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4.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차목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
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신 설>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6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허가관청은 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략)

<신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

-----.

1. ~ 17. (현행과 같음)

17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한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니

18. ~ 20. (생략)	<u>한 자</u> 18. ~ 20. (현행과 같음)
----------------	----------------------------------